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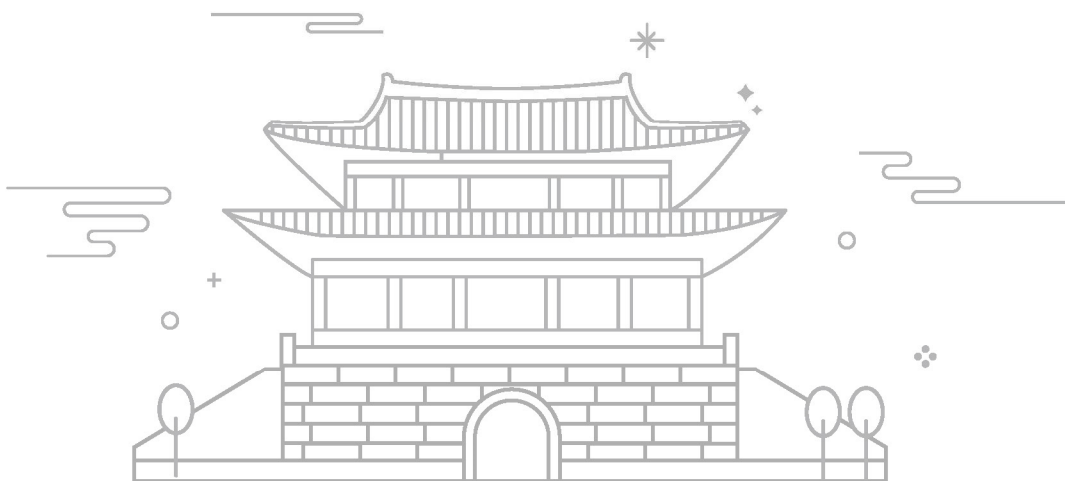
#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2022. 8. 11.(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Contents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개 회 사

- 국 회 의 원 **배현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1

## 환 영 사

- 국 회 의 원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 3

## 축 사

- 국 회 의 원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 5
- 국 회 의 원 **이용호**(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7
- 문화재청장 **최응천** ..... 9

## 주제발표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기본법 제정 및 법체계 정비 ..... 13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상우**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29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 **조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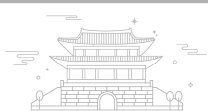
## 토 론

- 좌장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신희권**
- 강원대 명예교수 **박경립**(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 47
- 국민대 명예교수 **전영우**(문화재위원회위원장) ..... 51
- 국립국악원장 **김영운**(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 53
-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승준** ..... 57

## 참고자료

- 국가유산체제 도입 추진(문화재청) ..... 61





## 개회사



국회의원 **배 현 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문화재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까지 14,883건의 문화재를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1995년 불국사·석굴암을 시작으로 총 52건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문화재 관리체계는 국내·외의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 문화재보호법상 명칭지정이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준과의 간극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화재체제로 인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보호·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정문화재로 선정되지 못한 수많은 비지정문화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유명해진 500년 된 팽나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보호체계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갯벌’의 경우도 이러한 비지정문화재의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오랜 기간 담보상태였던 문화재 체제개편이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재 분야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될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비지정문화재들도 미래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한 분류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유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60년 만에 일본식 문화재체제에서 탈피하고 유네스코 기준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됩니다.

우리 문화재 역사의 뜻깊은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관계자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순서를 맡아주신 토론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번 토론회가 새롭게 도입될 ‘국가유산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귀중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11.



## 환영사



국회의원 **성 일 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배현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유산 체제 도입」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배현진 의원님과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실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조의 땀과 열이 깃든 우리 문화재는 지금까지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영위한 삶의 현장에서 민족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왔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현행 문화재 관리체계는 이전까지 방치되어 있던 우리 문화재들에 대해 국가 주도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국보, 보물 등 무려 14,883건의 많은 문화재의 관리와 보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문화재 관리체계는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인 유네스코의 유산 분류체계와는 상이하게 구분된 체계가 유지되어와 많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가 추진할 문화재 체계 개편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유물의 재화 성격이 강한 ‘문화재’의 명칭을 재화 성격을 넘어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으로 변경하여 문화재의 정책 기반을 확장하고, 비지정 문화재와 미래유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특히 함께 추진될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과 지역, 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는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를 드높여 국가 브랜드 가치 기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개최된 「국가유산 체제 도입」 정책 토론회는 우리 문화재의 미래가 달린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문화재 관리 정책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써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들 잘 귀담아듣고, 우리 문화재 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11.





## 축사



국회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입니다.

오늘 문화재 정책에 대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과 배현진 의원님,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응천 문화재청장님과 문화재청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내빈 여러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를 12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문화재의 미래가치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 가까이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동안 유지되었던 문화재 정책을 변화된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일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각 유산별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개별법 제·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 주제인 「국가유산 체제 도입」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화재 관리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현실적이고 발전적 대안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방안과 오늘 토론회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을 제·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11.



## 축사



국회의원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배현진 의원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승례문과 불국사 대응전은 물론 판소리와 막걸리 빛기 같은 국가무형문화재까지 하나로 묶어 자산이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로 불러왔습니다.

국내 문화재 분류체계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했던 탓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나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여 시대변화와 미래적 가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정책토론회가 일본식 문화재 체제를 유지하며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효과 등 우리나라가 더 큰 문화유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체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과 지혜가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11.



## 축사



문화재청장 **최응천**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배현진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님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해 함께 해주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신 이용호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영우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님, 박경립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발표·토론자분들, 참석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국가유산 체제 도입’ 법제화를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어느덧 올해로 60년이 되면서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변화되고 확장되어온 문화재 정책환경을 수용하기에 이제 여러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 도입안을 마련하였고, 이제 이를 반영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법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재 행정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사항과 제언들을 향후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문화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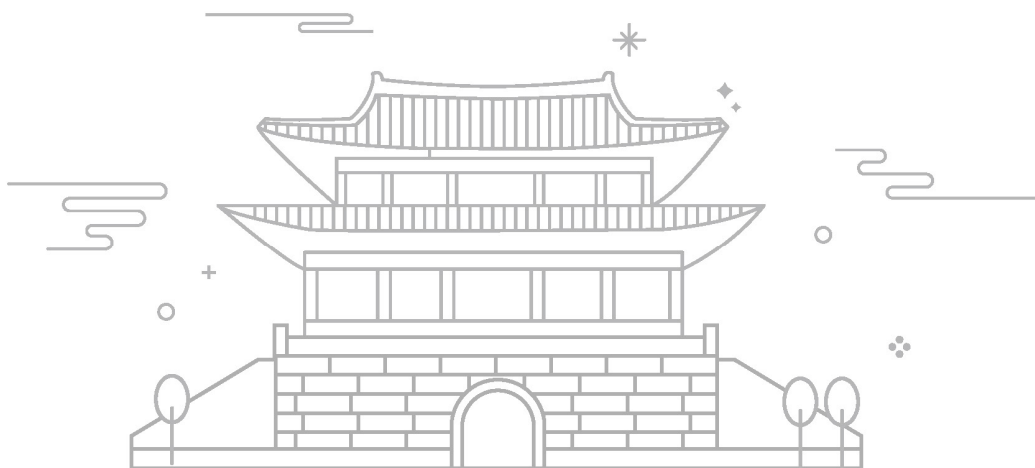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2. 8. 11.

주제발표 1

#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기본법 제정 및 법체계 정비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기본법 제정 및 법체계 정비

2022. 8. 11  
인하대학교 정 상 우 교수



### [목 차]

1. 문화재 용어의 타당성 검토
2. 유네스코 협약과 문화재 용어의 정합성 검토
3. 국가유산 용어의 적실성
4.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5.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쟁점
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정비



## 1. 문화재 용어의 타당성 검토

### ❖ 문화재

- 문화(文化)+재(財): 사전적 의미로 재는 재화와 자산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
- 일제강점기에 수입된 용어, 형용모순
  - ✓ 무형문화재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가? 사람인가? 종목인가?
  - ✓ 천연기념물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 ❖ 비교입법례

- 유럽
  - ✓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문화를 국가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용된 'Kulturgut'를 직역한 용어
  - ✓ 유럽에서는 무형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을 제외한 개념
- 아시아
  - ✓ 국가마다 문화재, 문물, 문화자산, 민족유산 등으로 사용
  - ✓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서는 무형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비지정문화재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

## 1-2. 문화재 용어의 연혁

### ❖ 조선시대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고적(古蹟) 용어에서 문화재 인식 형성 유추

### ❖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1919. 4. 15)

- 종교의 제도, 전도 및 건물에 관한 사무와 명소고적(名所古蹟)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 지방국 담당사무

### ❖ 일제강점기

- 고적및유물보존규칙(1916) cf. 일본은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제정
- 1927년경 언론에서 문화재 용어 사용,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

### ❖ 정부수립 이후

-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
- 교육법(1949), 구황실재산법(1954) 등에서 문화재 용어 사용
- 1960년 문화재보존위원회 규정 및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 1-3.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의 유래

#### 일본 1950년 문화재보호법

- ❖ 1. 건조물(建造物), 회화, 조각, 공예품(工藝品), 서적(書跡), 전적(典籍), 고문서,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 및 고고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 ❖ 2. 연극, 음악,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 ❖ 3.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및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우리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하 "민속자료"라 한다)
- ❖ 4. 패총(貝塚), 고분(古墳), 도성적(都城跡), 성적(城跡), 구택(舊宅) 기타의 유적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정원, 교량, 협곡, 해변(海濱), 산악, 기타의 명승지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예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 것 그리고 동물(생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 한국 1962년 문화재보호법

- ❖ 1.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 ❖ 2.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 ❖ 3.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 ❖ 4.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하 "민속자료"라 한다)
- ✓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의 의미는 1999년 개정에서 추가

## 2. 유네스코 협약과 문화재 용어의 정합성 검토

### ❖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문화재 분류체계

국내 분류체계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프로그램)

### ❖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편화에 따라 세계적 기준과 정합성 확보 필요

- Cultural Property보다 Cultural Heritage 선호 경향 및 범위 확대: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협약(헤이그협약)>, 1970년 <문화재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 협약>에서 문화재 개념으로 Cultural Property가 사용하였으나,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
- 문화유산에 자연유산의 일부인 명승, 천연기념물 포섭 불가능

## 2-2.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노력

### ❖ 세계유산 등 가입

- 세계유산협약: 1972년 채택, 한국 1988년 가입
- 무형문화유산협약: 2003년 채택, 한국 2006년 가입

### ❖ 세계유산에 따른 체계 정비 필요

- '유산' 용어 채택 필요
- 세계유산-국가유산-지역(향토)유산 체계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문화유산 체계와 정합성 제고
- 기록유산, 수중문화유산 개념 도입

### ❖ 세계유산 등재 노력

- 유네스코 유산 총 52건(세계 10위)
-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15건(21위)
- 인류무형유산 21건(3위)
- 세계기록유산 16건(4위)

###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

-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석굴암·불국사(1995년)', '창덕궁(1997년)', '수원화성(1997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 '한국의 서원(2019년)', '한국의 갯벌(2021)'
- 인류무형유산: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 강강술래(2009년), 남사당(2009년), 영산재(2009년), 제주 칠머리당영등굿(2009년), 처용무(2009년), 가곡(2010년), 대목장(2010년), 매사냥(2010년), 공동등재, 줄타기(2011년), 택견(2011년), 한산모시짜기(2011년), 아리랑(2012년), 김정문화(2013년), 농악(2014년), 줄다리기(2015년, 공동등재), 제주해녀문화(2016),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2018), 연등회(2020) 등
-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조선왕조의궤(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 조선통신사 기록물(2017)

## 2-3. 문화재 용어의 한계

###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원용

- 중분류체계가 우리나라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함

### ❖ 과거 유물의 자산·재화적 성격이 강함

-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배치

### ❖ 서구의 문화재 개념과 차이

- 자연물(동식물, 명승)과 무형적인 것(무형문화재) 또는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은 부적합

### ❖ 세계유산 체계와 정합성 결여

-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 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 3. 국가유산 용어의 적실성

❖ 국가유산 용어 도입의 필요성

- 문화재 용어는 국가주의 하의 일본으로부터 영향, 문화재 용어는 점 단위, 원형유지 및 경직성의 한계
- 문화유산은 최근 세계유산협약으로 인해 자연유산과 배타적 개념으로 오해 소지

❖ 국가+유산

- 국가: 공동체를 의미하고 '세계'유산 용어에 대응하며 유산의 가치와 권위, 국가의 보호 책무 강조
  - ✓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국가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지질공원, 국가정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국가중요기록물 등
- 유산: 유산 용어는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것으로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 재산적 가치가 아닌 공동체 의미를 강조

❖ 국가유산 개념의 적절성

- 첫째, 포괄적 개념으로 보호 범위 확대
- 둘째,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과거에서 미래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개념
- 셋째, '국가' 용어는 국가의 책임성 강화
- 넷째, '유산' 용어 사용으로 사적 소유 관념에서 공동체 가치로 전환
- 다섯째, 세계유산 협약에 대응 유리

### 3-2. 용어의 적합성 비교

용어	강점	약점
문화재 (1927년경)	- 60년간 사용한 용어 - 법률상 무형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포괄 - 법률상 비지정문화재 포함 - 정부조직 명칭과 동일	- 용어의 기원인 독일의 문화재는 무형, 명승, 천연기념물 등 제외 - 학술적으로 문화유산, 역사문화자원 등보다 좁은 개념 - 지정 또는 등록에 한정하는 이미지 - 문화재 아래 무형유산, 자연유산이 포함될 경우 용어 사용 한계
문화유산 (1969년경)	- cultural heritage 번역으로 적합 - 문화유산 현장에서 용어 채택 - 후대에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 - 문화유산신탁법(2006)에서 용어 사용	- 세계유산협약에 따를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배타적 개념 - 국민신탁법상 문화유산 용어도 단순히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개념상 협소
국가유산 (2013년경)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 포괄 용어 - 세계유산에 대응 개념 - 유산 개념에 전대의 문화적 소산 이외에 후대에 계승 가치 포함 - 보호 방법에 있어 동결보존보다는 다양한 보호 방식 인정 용어 - 개인 소유보다 공동체 가치 중시 - 타부처 유산 관련 정책에 통일성 기반	- 문화재청 정부기관 명칭 수정 필요

## 4.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헌법적 차원

- ❖ 헌법에서 전통문화 보호 책무와 국가유산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 헌법정책의 기본법 사례
  - 복지, 교육, 환경, 안전, 산림, 가족 등
- ❖ 비교입헌례
  - 문화유산과 문화권
- ❖ 문화재보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세계유산 체계와 정합성 제고
  - 미래지향적 보호 체계 정립
- ❖ 동아시아 문화전쟁 대응 역량
  - 역사학에서의 경쟁

### 4-2. 기본법 제정 필요성: 문화재보호법의 한계

- ❖ 문화재보호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체계 복잡성
  - 거의 매년 개정, 안전, 교육, 국외소재문화재, 상시적 예방관리(돌봄), 지능정보화, 벌칙조항 등
- ❖ 문화재 분류체계 및 보호범위의 한계
  - 문화재 분류체계 혼선: 특히 유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은 사실상 ‘지정문화재법’
- ❖ 문화재 보호 원칙의 경직화
  - 원형유지원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제화 및 권력화 현상
- ❖ 문화재 행정과의 부조화
  - 9개 이상의 과가 문화재보호법 운용(수리기술포, 발굴제도과, 무형문화재과 등을 제외한 정책총괄과, 안전기준과,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활용정책과, 국제협력과, 근대문화재과, 문화유산교육팀 등)
-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문화재 보호 역량의 한계

### 4-3.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연혁적 차원

#### ❖ 문화재청 소관 법령의 증가

- 문화재보호법('62년) → 문화재기금법('99년) → 고도보존법('04년) → 문화유산신탁법('06년) → 문화재수리법, 매장문화재법('10년) → 무형문화재법('15년) → 신라왕경법('19년) → 세계유산법, 역사문화권법, 풍납토성법('20년)

#### ❖ 다양한 입법 수요

- 자연유산법, 근현대유산법('20년), 국외소재유산법, 궁능문화유산법('21년) 등 제정안 발의

### 4-4.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체계정당성 차원

#### ❖ 문화재 행정과 정합성

- 문화재 보호 범위의 확대: 1962년 국보 및 보물 539건에서 2020년 12월 지정 문화재 4,132건과 등록문화재 896건
- 문화재청 소관 법률 12건 및 법률 제정 소요(자연유산법, 근현대유산법 등)
- 문화재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 및 발전

#### ❖ 하위 유산 체계의 근거 및 결합

- 개별 분야 발전시 종합성과 맥락성 결여 우려 대비

## 4-5. 기본법 제정 필요성: 미래환경 변화

### ❖ 문화재 주변 환경 변화

- 사회환경 변화: 도시화 및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재난 발생, 인구감소, 고령화
- 경제환경 변화: 문화재 브랜드화, 4차산업혁명, 문화유산의 성장동력화
- 국제환경 변화: 주변국가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 유네스코의 각종 협약
- 관련 부처의 유산에 대한 관심: 전통사찰, 자연환경자산, 한옥 및 우수건축자산, 국가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산림문화자산, 공원문화유산지구, 해양문화자산, 지역문화고유원형,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유산, 향토유산

### ❖ 보호 원칙의 재정립

-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른 체계적 보호 원칙 재정립
- 계승, 활용, 미래지향, 포괄적 보호 원칙 요구

## 4-6. 기본법 제정 필요성: 국민들의 수용성

(문화재청, 202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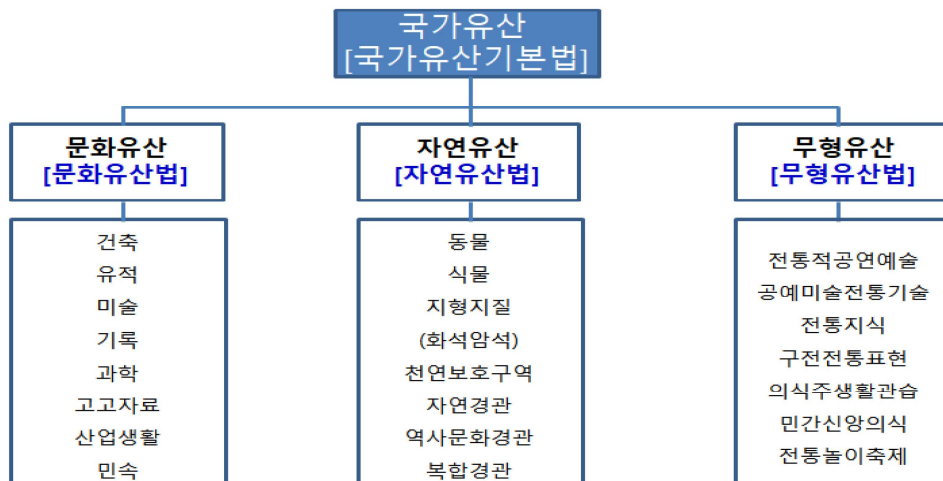
구 분	대국민(1,000명)	전문가(404명)
1.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 (76.5%/91.8%)	<p>■ 그렇다 ■ 아니다</p>	<p>■ 그렇다 ■ 아니다</p>
2. 유산 변경 적절성 (90.3%/95.8%)	<p>■ 그렇다 ■ 아니다</p>	<p>■ 그렇다 ■ 아니다</p>
3. 국가유산 적절성 (87.2%/52.5%)	<p>■ 그렇다 ■ 아니다</p>	<p>■ 국가유산 ■ 문화유산 ■ 기타</p>



## 5.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방향: (1) 보호원칙

문화유산현장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분류체계에 따른 보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 현장: “원래의 모습”에서 “원래 모습과 가치”로 완화</li> <li>• 현행 문화재보호법: 원형 유지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산 모습과 가치의 보호</li> <li>• 경관 및 주변 환경과 조화</li> <li>• 지속가능한 보호</li> <li>• 참여와 향유 증진</li> <li>• 면으로서 보호</li> <li>• 지역의 정체성 및 발전의 기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재법: 전형유지 및 1) 민족정체성,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li> <li>• 자연유산법(안): 1) 인위적인 간섭 배제 및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 반영, 2)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조화, 3) 재산권 침해 금지</li> </ul>

## 5-2.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방향: (2) 분류체계



### 5-3. 문화유산 분류체계

중분류	세부 대상(예시)
건축	궁궐, 사찰, 관아, 객사, 서원, 향교, 석탑, 석비 등
유적	성곽, 사지(절터), 가마터, 왕릉, 고분(군) 등
미술	회화, 서예, 조각(불상 등), 공예품(도자 등)
기록	서적, 전적, 문서 등
과학	과학기기(예: 측우기, 해시계 등), 무기·화기
고고자료	선사시대 유물, 고분·패총·사지·유적 등 출토품
산업생활	근현대 산업·생활품(예: 엄복동 자전거, 김소월 시집)
민속	가옥(고택 등), 제당, 의복, 가구, 장승 등

### 5-4. 자연유산 분류체계

중분류	세부 대상(예시)
동·식물	(천연기념물) 진도개, 두루미, 나무(숲), 군락지 등
지형지질(화석암석)	(천연기념물) 동굴, 주상절리대, 화석산지 등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독도, 한라산, 설악산, 홍도 등
자연·역사문화·복합경관	(명승) 한라산 백록담, 담양 소쇄원, 거제 해금강 등

### 5-5. 무형유산 분류체계

중분류	세부 대상(예시)
전통적 공예예술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강술래, 아리랑 등
공예미술전통기술	나전장, 조각장, 단청장, 소목장, 대목장 등
전통지식	해녀, 제염, 전통어로방식(어살) 등
구전전통표현	수수께끼, 민담, 설화 등
의식주생활관습	문배주, 경주교동법주, 장담그기, 김치담그기 등
민간신앙의식	영산재,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등
전통놀이축제	씨름, 단오제, 택견, 기지시줄다리기 등

### 5-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방향: (3) 지정등록체계 확대

❖ **현행: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

❖ **국가유산 체계:**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여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주의 정책 전환

개선(전)	개선(후)
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 ② 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① 현행 유지 ② 국가무형유산,국가민속유산
① 시도유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② 시도기념물(폐지) ③ 시도문화재자료	① 시도유형유산, 시도무형유산, 시도민속유산 ② 시도자연유산(명칭 변경) ③ 시도문화유산자료
① 국가등록문화재 ② 시도등록문화재 ※ 유형문화재 한정	① 국가등록유산 ② 시도등록유산 ※ 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① 향토문화재(비지정문화재) ※ 법적근거 無, 유형문화재 한정	① 향토유산 ※ 법적근거신설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 5-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방향: (4) 보호 및 활용 체계

### ❖ 과학적 보호

- 보존처리, 수리, 복원 등의 과학화
-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체계화

### ❖ 국가유산의 다양화

- 복합유산의 보호: 문화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무형유산, 무형유산+자연유산 등
- 디지털유산

### ❖ 면으로서 보호

- 보호범위 확대 및 경관과의 조화: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 공간단위 보호: 민속마을, 근현대역사문화공간, 고도(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권 등

### ❖ 미래환경변화

- 디지털유산
-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대비

### ❖ 국가유산 활용

- 교육
- 관광
- 산업
- 복지
- 콘텐츠

## 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각 유산별 법체계 정비

### ❖ 분법체계 필요성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제와 정합성
- 유형별 보호원칙의 재정립

### ❖ 법체계 정비 방향

- 유형별 보호 및 활용 방법 구체화
-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개별화
- 중분류 체계 유형 반영
- 현행 문화재보호법 운영상 미비점 정비

## 6-2. (가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복잡성과 비체계성

- 1962년 제정 이후 70여 차례 개정

### ❖ 문화재 용어 → 문화유산으로 전환

- 무형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등 제외

### ❖ 변화 방향

- 정의 및 중분류체계 정비: 일본법에서 탈피
- 기본법과 체계정합성 유지를 위한 정비
- 현행 지정, 보존, 관리 체계 발전적 유지

### ❖ 기대 효과

- 보존, 관리, 활용의 모법 기능
- 국민들의 참여와 향유 강화

## 6-3.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 현재 국회 논의중인 자연유산법

- 2020년 7월 10일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법안 수정 또는 재발의

###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총칙(자연유산 관련 정의),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천연기념물 등 지정, 현상변경, 정기조사, 동물 질병관리 및 치료, 수리 등 자연유산의 관리
- 자연유산 관리협약, 관광자원 활용, 주민지원, 증식·복원 및 유전자원 보존, 전통조경 보급육성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

## 6-4.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 2015년 제정 이후 개정 경과

- 2018년: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명예보유자 인정
- 2020년: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 2022년: 전승주체에 전승공동체 포함, 인류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근거 마련

### ❖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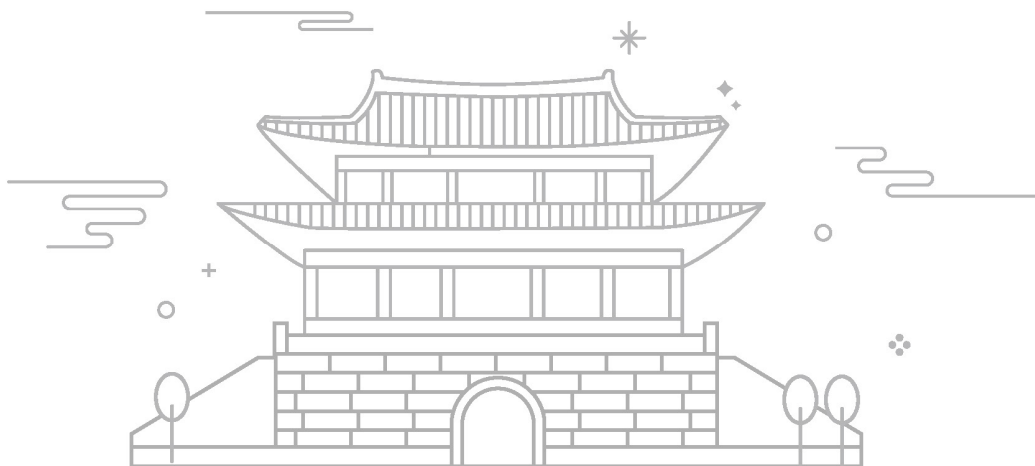
- 무형문화재 용어 무형유산으로 정비: 이 법 제정안에서 '무형문화유산' 용어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형문화재'로 수정한 바 있으나 학계의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음
- 무형문화재 정의 및 유형을 무형유산법에 이관하여 규정
- 등록 무형유산 도입 검토
- 무형유산 정보화, 미래사회에 적합한 보호체계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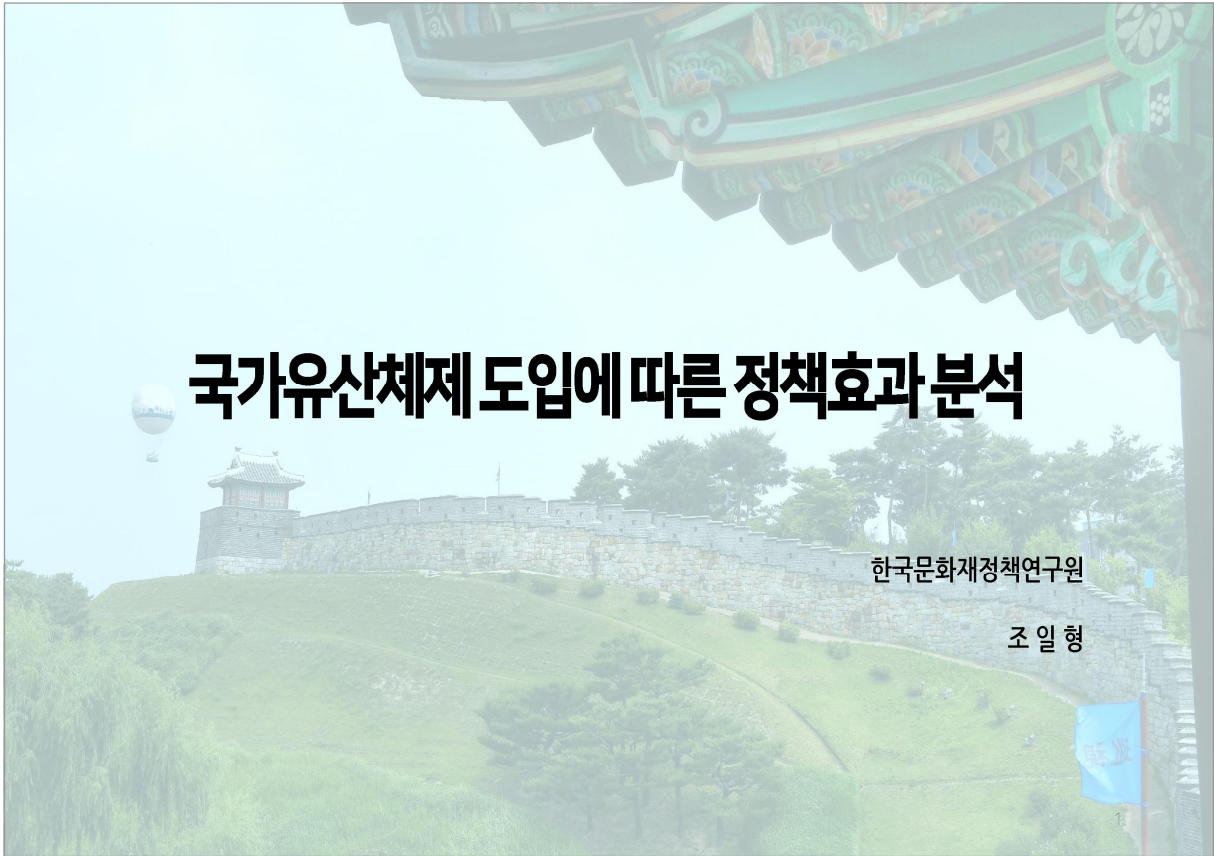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정책연구팀장 조 일 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목 차

- 1 연구목적 및 방법
-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Part 1,

## 연구목적 및 방법

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국가유산체제 도입(국정과제)에 따라 파생되는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당위성 확인

### 연구범위 및 방법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라 파생되는 유형별 기대효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경제·사회적 효과 평가

연구범위	연구방법
경제적 효과	국민인식조사, 산업연관분석
사회적 효과	국민인식조사

4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1, 연구목적 및 방법

### 국민인식조사

<b>Q 조사대상</b>	• 전국 만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b>Q 표본추출</b>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지역/성/연령별 비례배분
<b>Q 조사방법</b>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b>Q 조사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도 및 방문 경험</li> <li>• 국가유산 관련 정책 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li> <li>• 미래가치 창출에 필요한 국가유산 자원마련을 위한 추가 부담 의사</li> <li>•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평가</li> <li>•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사회적 효과 평가</li> <li>•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추가 자원 부담 의사 및 부담액</li> </ul>
<b>Q 조사 기간</b>	• 2022년 7월 20일~24일

조사절차	내용
조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항목 설계 및 조사지 구축</li> <li>- 문화재청, 행정학, 경제학 전문가 브레인스토밍</li> <li>• 조사지 보완 및 확정</li> </ul>
조사수행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수행 관련 연구진 회의</li> <li>• 조사 수행업체 선정 및 대상 선정</li> <li>• 조사 방식 등 전반적인 조사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조사지침 공유</li> </ul>
조사대상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패널 확인(선정된 조사 업체 내부 패널 확인)</li> <li>• 연구 목적에 적합한 조사대상을 구성하여 확정</li> </ul>
조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조사 결과 검토 후 조사 진행</li> <li>• 조사 진행과정 지속 확인</li> </ul>
조사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선정, 응답 누락 및 오류 점검, 보정</li> <li>• 완성된 설문지에 대한 내용 검증</li> </ul>
조사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자료는 Coding-Punching-Cleaning 과정을 거쳐 분석 자료 구축</li> <li>•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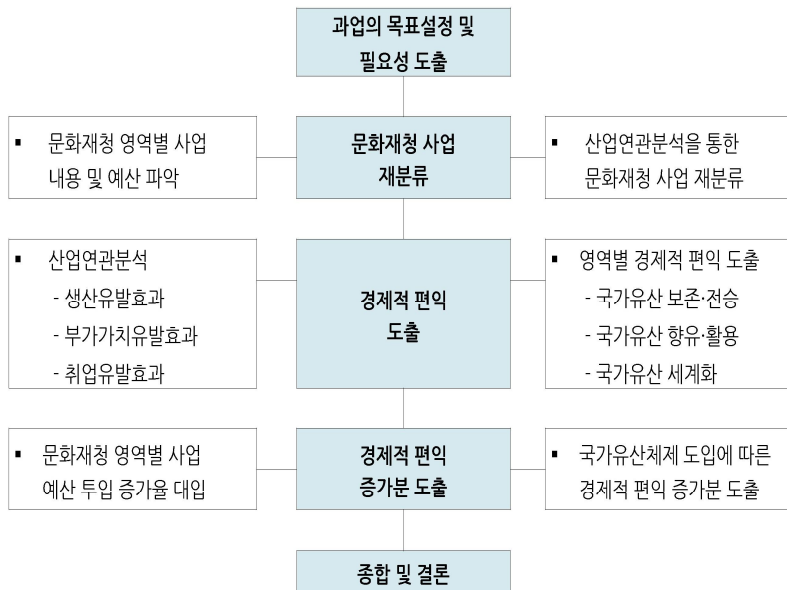
5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1, 연구목적 및 방법

###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에 향후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



6

Part 2,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7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분석설계

#### 분석체계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 추정		
도입 영향		경제적 기대효과
국가유산 보존·전승 확장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국가유산지정및비지정유산기반지역경제성치별성 지닌특화자원화,지역관광거점육성</li> </ul>
	국가유산 보호 범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공동체유산보호프로그램운영,국가유산기반지역 재생및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li> </ul>
국가유산 향유·활용 확대	국가유산 향유(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거리즐길거리등체험콘텐츠확대,유산접근성강화,활용 및교육프로그램등기능성증대</li> </ul>
	국가유산 산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기반따른국가유산관련산업(콘텐츠,기술및상품 개발등)성장</li> </ul>
국가유산 세계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유산등재확대에따른국가브랜드시장이및보존활용에따른 향유,관광등의활성화로경제활성화,우리유산우수성 확산으로한류기여</li> </ul>
	국제사회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분석1) 인식적 관점: 국민인식조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경제학 전문가 참여)]		(분석2) 계량적 관점: 산업연관분석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 의뢰]

8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분석1) 국민인식조사 분석

#### 자료 생산 및 분석 방법

##### □ 자료 생산 방법

- 국가유산 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측정하는 사전적 평가**의 성격
  - 이는 국가유산 체제 도입의 미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축적된 자료가 없음을 의미
- 공공정책은 시장에서 거래가치가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실측치가 아닌 **정책수혜 대상들의 기대치**를 통해 분석
-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는 **정책수혜자(일반국민)**를 대상으로 **지불의사와 정책 기대치**를 연계한 조사를 통해 생산
- 조사항목은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

9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자료 생산 및 분석 방법

##### □ 분석 방법

-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도입으로 파생되는 **효과성 증가분**과 **추가적인 자원 투입 효과분**으로 구분
- **(효과성 증감분)** 추가적인 자원 없이 전체적인 자원 투입 및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개선되면서 발생
  - 여기서 효과는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로 측정
  - 응답자에게 박물관 및 사적 관련 운영의 최근 4년 연평균 매출액과 종사자수 증감률을 기준지표로 제시하고 각 기능별 효과의 증감 여부와 증감률에 대해 응답하게 함
  - 각 도입 영향 유형으로 인한 유발계수의 증감 여부(증가, 동일, 감소) 응답 결과와 증감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해 증가분 산출

$$i \text{ 도입 영향으로 인한 유발계수 증가분} = \frac{(\text{증가응답비중}_i \times \text{평균증가율}_i) + (\text{감소응답비중}_i \times \text{평균감소율}_i)}{100}$$

- **(추가적인 자원 투입 효과분)** 도입에 따라 증대될 수 있는 **재원의 효과**
  - 재원의 증가분은 도입 영향 유형별 기대효과 확인 전-후 국가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향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낼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함

10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분석1) 국민인식조사 분석

####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 국가유산체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성 증가분

• 국가유산체제 도입으로,

생산유발계수 약 3.09% 증대

부가가치유발계수 약 3.69% 증대

취업유발계수 약 2.42% 증대

구분	도입 영향	응답비중			효과 증감률
		감소	동일	증가	
생산유발효과	국가유산 보존·전승 확장	2.2	58.4	39.4	2.38
	국가유산 향유·활용 확대	1.8	54.5	43.7	2.51
	국가유산 세계화	1.6	51.5	46.9	2.79
	<b>종합의견</b>	<b>1.5</b>	<b>46.1</b>	<b>52.4</b>	<b>3.09</b>
부가가치 유발효과	국가유산 보존·전승 확장	1.6	49.5	48.9	3.24
	국가유산 향유·활용 확대	2.3	47.2	50.5	3.08
	국가유산 세계화	1.7	45.7	52.6	3.36
	<b>종합의견</b>	<b>1.4</b>	<b>41.3</b>	<b>57.3</b>	<b>3.69</b>
취업유발효과	국가유산 보존·전승 확장	2.7	50.6	46.7	2.03
	국가유산 향유·활용 확대	2.2	47.9	49.9	2.19
	국가유산 세계화	2.2	50.3	47.5	2.08
	<b>종합의견</b>	<b>2.3</b>	<b>43.6</b>	<b>54.1</b>	<b>2.42</b>

주: 효과 증감률은 도입 영향 유형별 효과의 증감 여부(증가, 동일, 감소) 응답 결과와 각 증감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이용해 환산한 값임

11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 국가유산체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성 증가분

• 조사 결과를 이용하면 추가적인 국가유산 예산 증액 없이 기능의 국가유산체제 도입으로 유발효과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도출 가능

-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해 유발효과 개선 정도를 각 도입 효과 유형별 평균 증감률과 종합 증감률을 이용해 범위를 산출하고 각 유발효과를 도출함

- 국가유산 관련 예산액(12,014억원)이

1년간 투입된다고 할 때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529~63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342~391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51~520명

구분		효과 증감률	결과
생산유발효과	평균값	2.56	529.0억원
	<b>종합값</b>	<b>3.09</b>	<b>638.5억원</b>
부가가치유발효과	평균값	3.23	341.8억원
	<b>종합값</b>	<b>3.69</b>	<b>390.6억원</b>
취업유발효과	평균값	2.10	451명
	<b>종합값</b>	<b>2.42</b>	<b>520명</b>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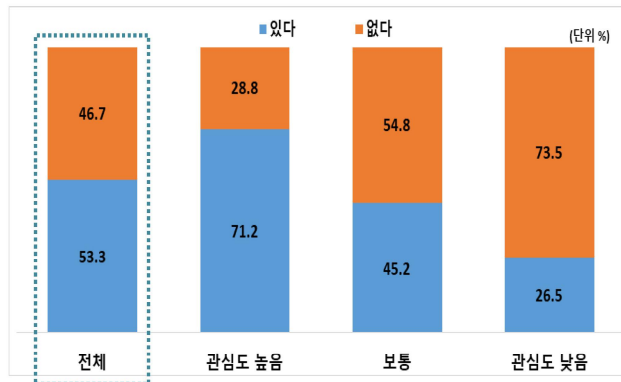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분석결과

□ 국가유산체제 도입으로 인한 자원 투입 효과분

- 국가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향후 세금을 추가적으로 낼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비중은 53.3%
  - 응답자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세금 지불 의사가 높게 나타남



1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분석결과

□ 국가유산체제 도입으로 인한 자원 투입 효과분

-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영향과 기대효과를 확인 후 추가적인 세금을 낼 의사가 생긴 사람의 응답 결과로 투입 가능한 추가 자원의 규모 추정
  - 응답자 3.3%가 1인당 평균 9,542원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는 것을 만 20세 이상 인구수로 환산하면 1인당 315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는 것
  - 이는 총 134.5억원(315원×만 2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국가유산 관련 정책에 투입 가능한 추가 자원을 고려하면,

**231.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18.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40명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억 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효과분	231.6	118.7	240

14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분석결과

#### □ 경제적 효과 종합

- 국가유산체제 도입으로 파생되는 효과성 증가분과 추가적 자원 투입 효과분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효과 파악  
-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생산 유발효과 761~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60~509억원, 취업 유발효과 691~760명

(단위: 억 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효과성 증가분	529.0~638.6	341.8~390.6	451~520
자원 투입 효과분	231.6	118.7	240
<b>총 효과</b>	<b>761~870</b>	<b>460~509</b>	<b>691~760</b>

※ 참고 : 2020년 한류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한류의 생산유발효과는 출판 2,617억원, 만화 802억원, 영화 426억으로 나타남.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출판 993억원, 만화 304억원, 영화 176억원으로 나타남. 취업유발효과는 출판 2,383명, 만화 730명, 영화 303명으로 나타남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 2020 한류 파급효과)

15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효과분석결과

#### □ 경제적 효과 종합

- 국가유산체제 도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됨을 고려, 향후 5년간 창출되는 총 경제적 효과 산출  
- 효과성(유발효과) 증가분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유산 정책 자원이 일정하게 증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2017~2021)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증감률(1.22%) 고려

(단위: 억 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효과성 증가분	2,710.4~3,271.6	1,751.1~2,001.2	2,310~2,665
자원 투입 효과분	231.6	118.7	240
<b>총 효과</b>	<b>2,942~3,503</b>	<b>1,870~2,120</b>	<b>2,550~2,905</b>

16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분석2) 산업연관분석

#### 문화재청 사업재분류

- 문화재청 영역별 사업 내용 및 투입예산 파악

- 국가유산체제 도입 영향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사업 예산)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선별

(단위: 백만원)

영역	관련 사업	예산
국가유산 보존·건설 확장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국유문화재관리, 무형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문화재보수경비, 유형문화재관리,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 궁궐문화재관리, 조선왕릉보존관리, 매장문화재보존, 문화재예방관리강화, 문화재 돌봄사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등	777,716
국가유산 향유 활용 확대	문화유산연구기반시설구축, 문화유산 스마트보존활용기술개발(R&D), 공승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문화유산 활용 진흥,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 한국문화재단지원, 문화유산교육활성화, 문화유산세넬 구축운영, 문화유산조사연구(R&D) 등	236,672
국가유산 세계화	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협력(ODA), 유네스코이태무형유산센터운영,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92,738
계		1,107,126

자료 : 문화재청(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인건비, 기본경비,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본청운영경비, 기금운영비 등 제외).

-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문화재청 사업 재분류

- 선별된 각 사업을 산업군 별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9년) 기준으로 재분류

17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분석2) 산업연관분석

#### 경제적 편익도출

-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각 사업별 계수 적용 및 경제적 편익 도출

#### <경제적 편익 유발계수 도출>

(단위: 명/10억 원)

관련 산업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F 건설	2.000	0.824	11.093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624	0.859	8.510
L 부동산서비스	1.440	0.959	4.98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811	0.862	11.059
N 사업지원서비스	1.522	0.916	15.247
P 교육서비스	1.500	0.926	14.94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1.767	0.883	14.464
S 기타 서비스	1.996	0.831	24.630

자료 : 한국은행(2019), 2019년 투입산출표(통합대분류).

각 사업예산 투입

#### <경제적 편익 도출>

(단위: 억 원, 명)

영역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국가유산보존·건설	14,556	6,600	9,097
국가유산향유·활용	4,103	2,090	3,224
국가유산세계화	1,679	801	1,067
계	20,338	9,490	13,388

18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분석) 산업연관분석

#### 경제적 편익증가분도출

- 국가유산체제 도입 투입(예산) 증가율 산정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범위 확장 및 기능 강화(투입&예산 요소)
  - 각 영역 별로 향후 5년간 ('23~'27) 증가율 산정
    - \* 대상 확대 및 기능, 사업 확장 등 종합적 고려
  - ①② (공통) 지정등록유산 증가율 10% +
    - 목적유산 및 미래잠재유산 (포괄적 보호체계 확대) 10% = 20%
  - ③ 세계유산 등재 확대 증가율 25%

영역	증가율
① 국가유산 보존·전승 확장	× 20%
② 국가유산 활용·활용 확대	× 20%
③ 국가유산 세계화	× 25%

구분	범위 확장 및 기능 강화내용
국가유산 범위 확대(지정등록유산 확대 및 목적유산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등록)유산: (21) 14,712건 → (26) 16,235건 (+1,523 / 110.4%)</li> <li>• (근현대유산법) 예비등록유산제도 도입</li> <li>• 목적(향토)유산법적 근거 마련 포괄적 보호관리 체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자원(문화유산) 조사: 약 60,000만건 (20-24) 233억 (25-)매 20억</li> <li>-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100개 종목(연20개) (22-27) 135억</li> <li>- 자연유산 잠재자원 확보: (21) 42건 → (26) 50건</li> </ul> </li> </ul>
각 유산별 특성화, 전문적 보호기반 심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자연유산원 설립, 천연기념물(동물) 질병관리, 증식·복원, 유전자원 보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후계육성·보급, 자연유산관리협약, 기관단체 지원, 주민지원 사업, 전통조경 보급·육성 등</li> <li>• 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육성 지원(22~27 / 720억), 전통공예품 정부수매제도(23~27 / 600억), K-무형유산 아카이브센터 건립</li> <li>• 문화유산: 8대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육성</li> </ul>

19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경제적 편익증가분도출

구분	범위 확장 및 기능 강화내용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룡사지, 미륵사지 디지털 복원</li> <li>•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li> <li>• 역사도시(왕도) 타임머신 구축 등</li> </ul>
국가유산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산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li> <li>•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23~27) 710억</li> <li>• 문화재영향진단(지표조사+현상변경허가) 통합 시행</li> </ul>
국가유산 보존관리, 조사연구 및 산업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라역사문화센터 설립</li> <li>•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li> <li>• 제주해녀의 전당, 연동회 전수교육관 건립</li> <li>• 국가유산 국가연구개발(R&amp;D) 확대: (21~25) 500억 규모</li> <li>• 국가유산 산업 기반 마련 및 진흥 (산업법 제정 등)</li> </ul>
국가유산 활용(활용 및 교육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재(세계유산 포함) 활용사업: (22) 443개 → (26) 500개</li> <li>•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정: (22) 58개 → (26) 100개</li> <li>•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22) 5건 → (26) 30건</li> </ul>

구분	범위 확장 및 기능 강화내용
유산보존관리, 활용 정책 및 관리 시스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준(조사지표) 변경</li> <li>• 역사인물발굴 선양</li> <li>• 유산 안내해설문안 변경</li> <li>• 지역 마을 공동체 육성</li> <li>• 국고보조사업 다변화(원형유지-가치활성화)</li> <li>• 국가유산 유관부처(기관) 협업 강화</li> <li>• 대분류별 외부 전문가그룹 네트워킹 강화, 대학교육 커리큘럼 재편</li> <li>• 기관 편제 및 부서명 유산별 변경</li> <li>• 자연유산, 무형유산 업무비중 강화</li> </ul>
국가유산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 확대: (21) 52건 → (27) 65건 (+13 / 125%)</li> <li>• 세계유산 총회 유치</li> <li>• 세계유산 국제기구(C2) 설립 추진: 자연유산 분야 등</li> <li>• 국제교류협력 확대: ODA 다변화, 국제기구 분담금 상향 등</li> <li>•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li> </ul>

20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분석2) 산업연관분석

#### 최종 경제적 편익 도출

- 현재 경제적 편익 대비 증가분 도출

(단위: 억 원, 명)

구분	2022년 문화재청 예산 기준(A)				국가유산체제 도입 이후(B)			증가분(B-A)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증가율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① 국가유산 보존·전승	14,556	6,600	9,097	×20%	17,467	7,920	10,899	2,911	1,320	1,802
② 국가유산 향유·활용	4,103	2,090	3,224	×20%	4,924	2,507	3,859	821	417	635
③ 국가유산 체계화	1,679	801	1,067	×25%	2,099	1,001	1,332	420	200	265
계	20,338	9,490	13,388	-	24,489	11,428	16,090	4,151	1,938	2,702

21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분석결과 종합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향후 5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국민 인식 조사	효과성 증가분	2,710.4~3,271.6억원	1,751.1~2,001.2억원	2,310~2,665명
	재원 투입 효과분	231.6억원	118.7억원	240명
	총 효과	2,942~3,503억원	1,870~2,120억원	2,550~2,905명
산업연관분석		4,151억원	1,938억원	2,702명

-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되기 전 제한된 자료를 통해 기대치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으나,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각 영역의 보존, 관리, 활용 정책이 확대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22

Part 3,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2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 분석설계

####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 경로 파악

도입 영향	기대효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가유산 유형별(문화, 무형, 자연) 보호범위 확장(등록유산, 목록유산)으로 인해 다양한 향유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민 편의 증진	- 국가유산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 발굴비 지원 확대 등 규제 개선 -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국가유산 보존·전승에 따른 데이터 및 정보 제공
지역상생 발전 촉진	- 국가유산 기반 지역재생 및 균형발전 기대 - 지역의 지정 및 비지정유산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사업(관광, 일자리 등) 확대
국가 위상·정체성 강화	- 유네스코 관리체계에 맞춰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보존·관리 강화 - 세계유산 활용에 따른 향유, 관광 등의 활성화로 국가 브랜드 신장 - 국제사회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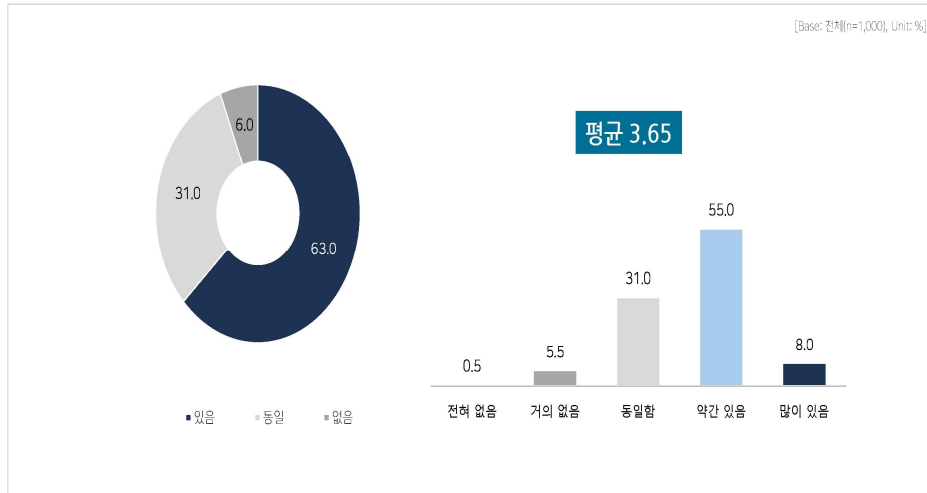
24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 분석결과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사회적 효과 : 1) 문화향유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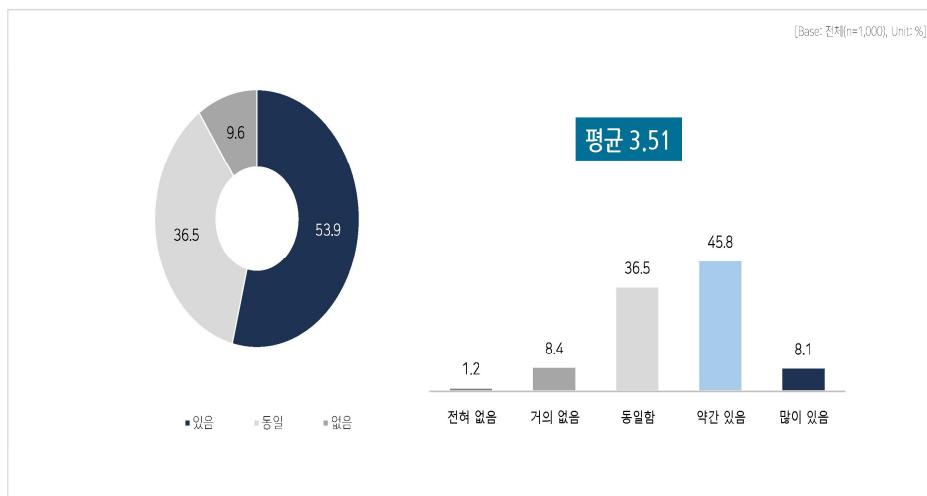
25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 분석결과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사회적 효과 : 2) 국민 편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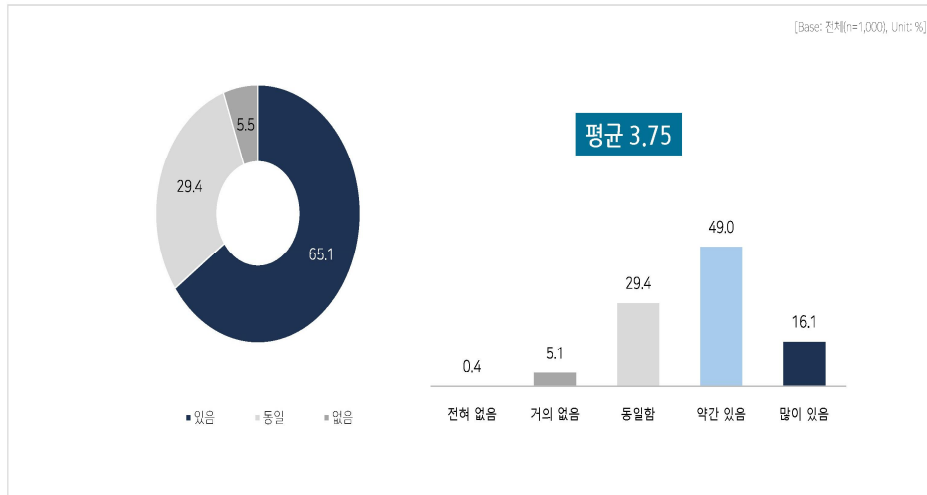
26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 분석결과

####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사회적 효과 : 3) 지역상생 발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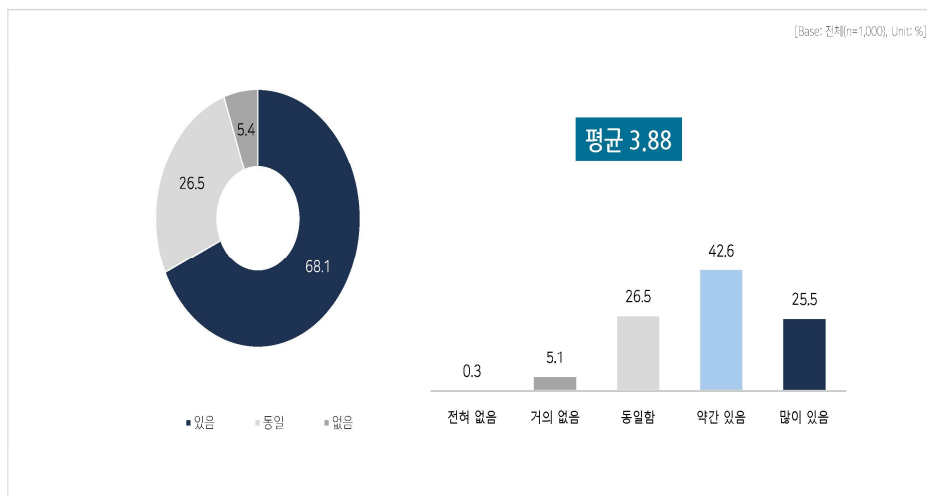
27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 분석결과

####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사회적 효과 : 4) 국가 위상/정체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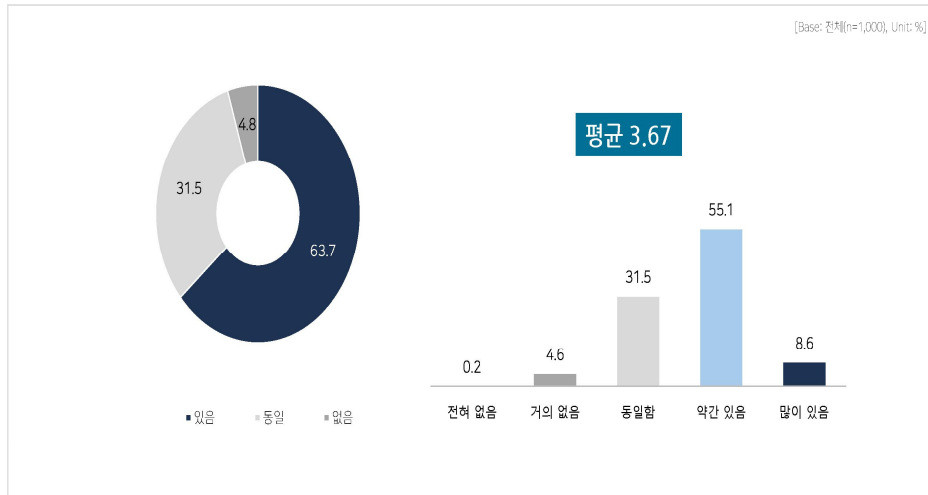
28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Part 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 분석결과

#### 국가유산체제 도입의 사회적 효과 : 5) 종합의견



29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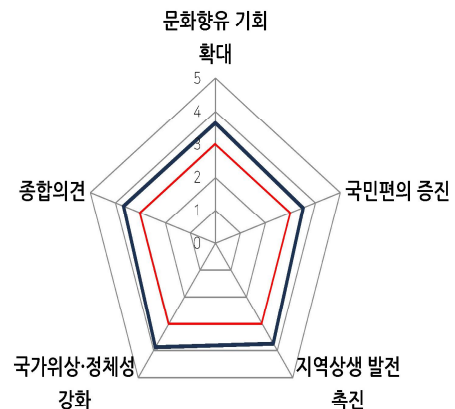
## Part 3,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 분석결과종합

-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사회적 영향	평균값
문화향유 기회 확대	3.65
국민편의 증진	3.51
지역상생 발전 촉진	3.75
국가위상·정체성 강화	3.88
<b>종합의견</b>	<b>3.67</b>

- 국가유산체제가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모든 항목이 중간값인 3점보다 높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국가유산체제가 도입, 운영되고 국민의 체감 수준이 높아진다면 긍정적 효과 인식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0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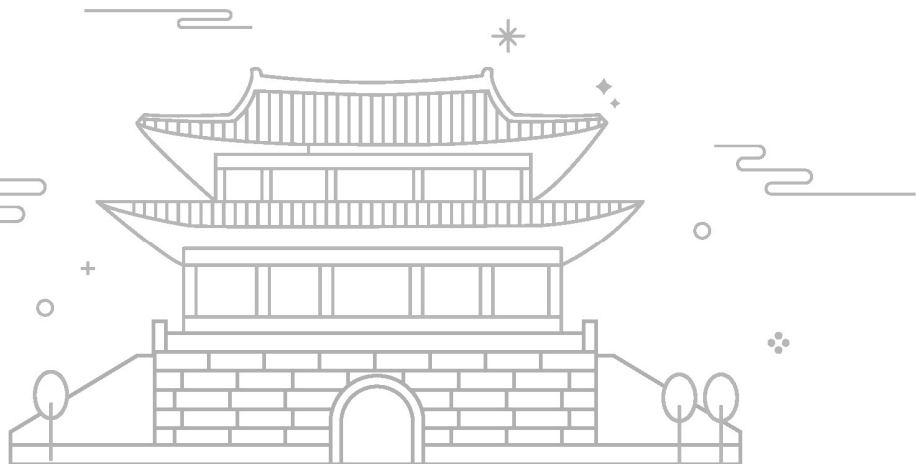
**토론좌장**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신희권**

**토 론 자** 강원대 명예교수 **박경립**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대 명예교수 **전영우**  
문화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악원장 **김영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승준**







## 국가유산과 문화유산으로의 전환과 의미

강원대 명예교수 **박 경 립**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는 매우 오래되었다. 물성을 가진 오브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대부분 형태를 가진 대상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던 관습은 무형의 유산도 무형문화재로 부르게 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 문화유산이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형이 중심이 되어도 그가 입지한 공간과 장소와 함께 가치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포용적으로 포함하는 용어의 도입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시작한지 오래인 대한민국은 이미 영어로 표기 할 때 Heritage라고 사용하고 있으니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부르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세계유산을 포함한 각국의 유산은 ‘점의 보존’에서 ‘면의 보존’으로 확대된지 오래며 이제는 ‘입체적으로 보호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문화유산과 동등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성을 지닌다. 무형유산도 제대로 전승되지 않으면 이어 갈 수 없다.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유산은 쉽게 실전된다. 만들어진 모든 공간과 건축은 사람들의 삶을 담아온 것이다. 문화를 만들어간 사람들과 문화를 담은 그릇은 항상 함께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관계된 전통기술도 이어 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기술도 쉽게 잊혀 진다. 그간 우리는 빠른 성장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여왔다. 이제 속도를 조절하고 우리 역사 속에 가꾸어지고 조성된 유산의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혜롭게 보존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 역사 속에 만들어진 유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음을 세상이 인식하고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만 바꾼다고 유산이 저절로 보존되지는 않는다. 점점 더 도시로의 집중이 가중되고 그에 따라 고밀도 고층 건축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곳곳에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문화유산은 더욱 왜소화 되고 있다. 문화유산이 조성될 당시의 중요시 되었던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장소적, 경관적 가치 또한 점점 더 축소되고 있어 도시를 메말라가게 하고 있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도 도시는 더욱 그린인프라를 많이 조성하여야 하는데 도시 숲을 만들지는 못해도 있었던 숲을 없애는 많은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도시는 곳곳에 비어있는 오픈스페이스가 있고 머물고 설수 있는 작은 공간과 장소가 생활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궁궐은 유서 깊고 뛰어난 역사문화를 증거 하는 문화유산이자 서울을 지키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한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 자리 잡은 조선 왕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들 또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숲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며 생물다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또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종묘의 정전은 절제된 수평적 건축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축유산중의 하나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북한산과 백악을 이어 내려온 지맥과 정전을 둘러싼 숲이 없다면 그 가치는 반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쪽을 둘러싼 남산의 존재 또한 서울의 역사문화경관의 중요한 일부인데 종묘에서 바라본 남산은 근자에 개발된 아파트에 의해 가로 막히고 말았다. 문화유산을 점으로 다루는 100미터 법적 보호망은 더 이상 서울의 유산을 보호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역사문화 경관에 대한 인식 없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이 진행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서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둘러싼 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고 정도 육백 삼십년을 넘어가는 도시의 유구한 역사를 이야기 하지만 그 가치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도시계획과 건축에 연결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와 닿아 있지만 유산의 보존은 도시의 건강함과 품격을 지켜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산의 보존은 금세기 가장 중요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밀도를 낮추고 탄소를 흡수하고 경관을 보존하며 문화관광의 기반이 된다.

자연유산의 가치가 더욱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을 계속하게 되고, 유구한 역사 속에 뛰어난 문화를 꽃피운 민족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유산이 유산을 보존하는데 관계하는 부처나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섬처럼 홀로 떨어져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전공공 하는 보존 관련 기관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는 국민 모두와 함께 긴밀한 협조와 가치 공유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유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민대 명예교수 **전 영 우**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여 년 동안 문화재위원회의 일원으로써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우리들의 바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한편, 국회에서 입법 절차로 이어져 감회가 새롭다. 오늘 국가유산체제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배현진 의원님, 성일종 의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토론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발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넓힐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자연유산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 위원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날아다니는 새가 어떻게 문화재인가”라는 질의 내용도 있다. 문화재를 고서화나 도자기와 같이 재화로만 봐온 잘못된 시각 때문에 생긴 일화로서, 민족적 유산이라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으로 대등하게 분류한 발제자의 접근 방법은 천연기념물 분과 문화재위원들이 지난 20여 년간 일관되게 요구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기존의 분류체계 대신에 국가유산 체계가 정립되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재작년부터 주창했던 자연유산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므로 발제자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 건수는 흔히 한 국가의 문화적 품격을 상징하는 지표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15건이다. 이들 15건의 세계유산 중 13건은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은 단 2건뿐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에 이어 작년엔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가 있었다. 앞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법 체계가 구축되면 단 2건뿐인 한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회도 확대되리라 기대한다. 국가유산 체계 구축이 불러올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청한다.

2. 2021년 유엔 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로 대기, 바다, 육지, 빙하, 생태계에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전례가 없는 기후변화가 발생하였고, 특히 1950년대 이후에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3배 정도로 심해졌으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가 되면 평균 지구 표면 온도가 섭씨 3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온난화 경향은 전 지구 평균보다 훨씬 강하다. 지난 100년간 연평균 기온(1.8도)과 새벽 최저 기온(2.4도)의 상승은 세계평균 기온(1.09도) 상승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으며, 단기간에 기록적인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자연유산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인공적인 공간 속에 있거나 전문 인력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유산과 달리 자연유산은 미구에 닥쳐올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법체계 정비에 더욱 정치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고견을 구하고자 한다.

3. 문화재청이 지정하여 보호 중인 문화재 중에 명승과 천연기념물 지정 건수는 전체의 16% 정도로 적지만, 지정 면적은 상상 이상으로 넓다. 이번 기회에 합산해 보니 명승 129건의 총면적은 100,682ha, 천연보호구역 11건 중 섬 등을 제외한 6건의 총면적은 56,428ha로 합계 157,110ha이었다. 이 지정 면적은 남한 면적 1,004만ha의 1.6%에 해당한다.

이들 자연유산이 우리 사회에 창출하는 공익가치와 탄소 배출권 가치를 거칠게 산정해 봤다. 2021년 조선 왕릉의 수목에서 창출되는 조사 보고서를 원용하는 한계는 있지만, 창출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현인릉(105ha) 녹지에서 창출되는 공익가치 36억 8천만 원과 탄소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 12억 6천만 원, 합계 49억 4천만 원 이었고, 이것을 편의상 단위면적으로 나누면 1ha당 창출되는 공익가치와 탄소 배출권 가치는 4,700만 원이었다. 서울 주변의 왕릉 녹지에서 이만한 액수의 공익 가치가 창출됨을 알고 있는 이가 많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 환산액을 자연유산(명승과 천연보호구역)에 대입하면 7,384억 원에 달한다. 국가유산체계가 도입된다고 특별히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는 아니지만, 정책효과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유산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공익 가치 등도 평가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 무형유산으로의 명칭변경을 환영하며



국립국악원장 **김 영 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정책에서 무형문화재는 유형 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와 더불어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및 국민의 전통문화 이해와 향유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간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전통적공연예술과 공예미술 전통기술을 비롯하여 전통지식·구전전통표현·의식주생활관습·민간신앙의식·전통놀이축제 등 각 분야에 총 154종목을 지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시도지정무형문화재는 585종목에 이르고 있다.

### 〈분야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음악	춤	연희	공예	건축	미술	생산지식	기타 전통지식	의생활	식생활	민간신앙의례	종교의례	기타 의식의례	놀이	축제	무예	복합	합계
국가무형문화재	29	7	16	40	3	10	4	1	1	9	11	5	4	7	4	2	1	154

### 〈지역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무형문화재	32	5	-	5	1	-	-	-	10	4	4	4	9	14	11	15	5	35	154
시도무형문화재	52	25	17	29	20	24	6	3	68	32	27	55	62	53	48	41	23	-	585

### 〈국가무형문화재 현황(2022. 7. 31. 현재)〉

구분	지정범주		공동체*	개인	단체	복합	계
	종목	세부종목포함					
지정종목	종목		15	66	58	1	140
	세부종목포함		15	68	71	-	154
전승자	보유자		-	113	56	-	169
	전승교육사		-	68(1)	167	-	235(1)
	이수자		-	3,083	3,789	-	6,872
	보유단체		-	-	71	-	71
명예보유자			-	12	47	-	59
전수장학생			-	59	-	-	59

\*공동체성 종목(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 :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만들기, 갯벌어로, 한복생활

지난 60여 년간 ‘중요무형문화재’와 ‘기·예능보유자’라는 용어가 대부분의 국민들도 익숙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으며, 보유자를 지칭하는 별칭이었던 ‘인간문화재’라는 말은 국가가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전통문화를 올곧게 지켜온 각 분야 전승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우와 존경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해당 분야의 명장·명인들이 다듬어 온 문화예술·공예기술·전통 지식 등을 재화(財貨)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文化財’라 부른다거나, 대표적인 전승자를 ‘인간문화재’라 지칭한 것에 대한 적절성은 늘 지적되어 왔다. 특히 ‘문화재’라는 말은 이미 창작행위가 완료되어 그 결과물로 완성된 ‘작품’이 지니는 ‘재화적 가치’를 연상케 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무형문화재에 속하는 기술·예술·지식·관습·의식·놀이 등은 현재적 재현을 필수적이며, 이때 예술가의 창의적인 해석과 표현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공연예술분야를 예로 들면 판소리 현장에서 전대로부터 전승되는 원형만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개성이나 당대적 해석이 결여된 연주는 소위 ‘사진소리’라 하여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이들 무형의 유산들이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유기적 전승의 대상이며, 그것은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게 볼 때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는 역사적 흐름과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아내기에 아쉬움이 많은 용어였다.

이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유산 체제 도입(국정과제)을 위한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유산’이란 용어는 역사성과 포괄성을 지니는 용어이며, 그간 ‘문화재’가 지녔던 부적절성의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적 문화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매우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되며, 무형유산은 다시 국가 무형유산과 시도지정무형유산으로 나뉘는데, 발표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지정종목 중심의 관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다양한 종목에 대한 포괄적 관리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즉 국가나 시도 지정종목 이외에 국가와 시도의 ‘등록유산’과 기초단체의 목록에 등재되고 관리될 ‘향토유산’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근현대유산’도 포함될 것인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종목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역에서 다수의 종목이 지정을 희망하였으나, 역사성이나 기·예술적 가치 등 여러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지정을 받지

못한 종목은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지원을 할 방안이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등록유산과 향토유산을 통하여 적절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게 되는 점 역시 무형유산의 전승과 활성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다만,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첫째, 국가무형유산과 시도무형유산 사이의 분명한 성격과 구분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기대한다. 향간의 인식처럼 양자가 계층적 위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여 종목간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던바, 등록유산·향토유산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체계의 확립과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무형문화재 제도 초기의 관점이나 인식태도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분야가 있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분야·종목간의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무용·연희·미술·공예 등 재현(공연)을 통하여 구현되는 무형유산의 경우, 그 원형의 고수에 그치지 않고 해당 유산이 지니고 있는 전형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해석과 시대성을 반영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미래에도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 살아있는 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형유산의 전승자들로 하여금 원형과 전형, 전통성과 창의성의 조화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에도 의미를 가지는 무형유산의 계승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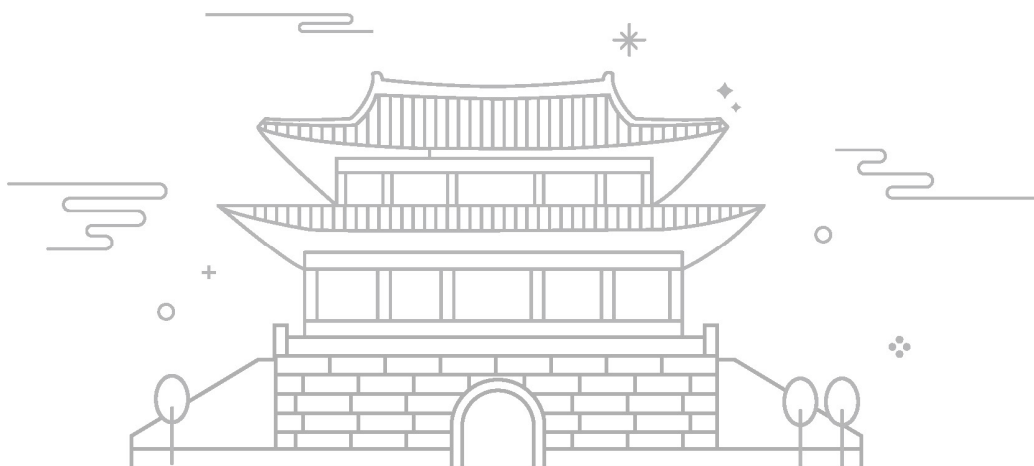
거듭 무형문화재의 무형유산으로의 명칭 개선과 분류체계 개편을 환영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적 정비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 승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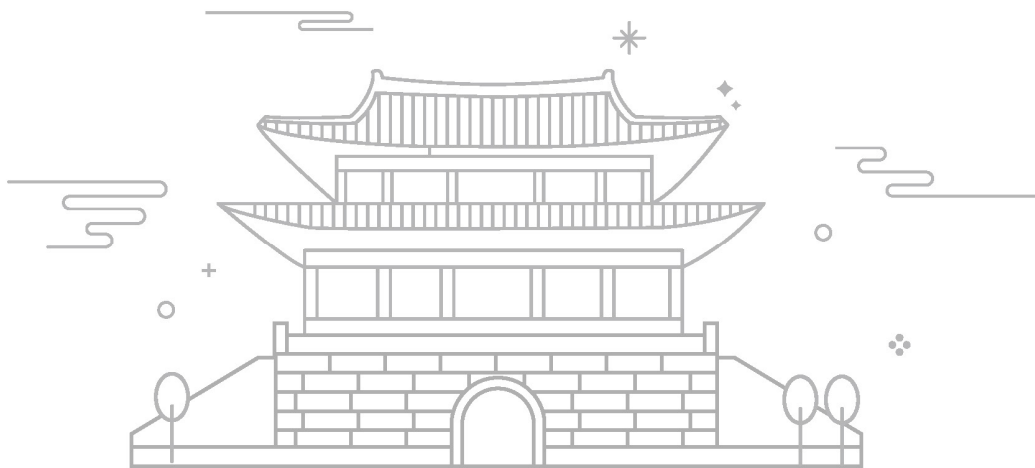




참고자료

# 국가유산체제 도입 추진

문화재청







# 국가유산체제 도입 추진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2022. 8.



###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개선 방향
II	추진 경과(설문조사 및 확정·발표 포함)
III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내용 및 기대효과
IV	향후 추진 계획
V	(참고) 국가유산 국내외 사례

# I. 추진 배경 및 개선 방향



## 1) 추진 배경

### “문화재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

-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국내 분류체계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명칭한계)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 내포, 시대변화를 반영한 재정립 필요
-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원용하여 우리 문화재보호법 제정(1962년, 명칭 및 분류체계 동일) △과거 유물의 자산, 재화적 성격이 강함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지적 △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 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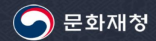
## 2) 개선 방향

### “국제협약의 분류체계 원용, 문화재법 및 행정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 (국제기준의 정합성)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2003년) 등의 국제적 유산 분류체계를 원용 하여 유산 체계의 도입을 추진
- (지정등록 체계 및 법률 체계와의 연계성) 개별 유산의 형태와 속성을 고려하여 대분류 및 중분류 재편,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국가 및 시도지정·등록) 체계와 관련 법률체계를 함께 연계 고려하여 통합적인 개편안 마련

1/13

# II. 추진 경과



## 1) 추진 경과

### “내·외부 문화재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 과거 논의 진행 상황 ◇

- ▶ 2005년 문화재청, 「문화재 분류체계」
- ▶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 ▶ 2017년 문화재청,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 그간의 논의 및 연구사항을 집약하여 개선안을 마련,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추진

### ◆ 2022년 추진 경과 ◆

- (1월초) 개선안 초안 마련
- (1.26.)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전 의견수렴 회의 개최  
\*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담당 공무원, 전국학예연구회 소속 학예직 공무원(기초지자체) 대상
- (2.8.~3.15.)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의견수렴(9개 분과 보고(원안 접수))  
\* 민속분과(2.8.), 동산분과(2.10.), 사적분과(2.16.), 매장분과(2.16.), 건축분과(2.17.), 근대분과(2.22.), 천기분과(2.23.), 세계분과(3.10.), 궁능분과(3.15.)
- (2.17.) 문화재분야 **전문 언론인** 대상 자문회의
- (3.18.) **불교계(조계종)** 대상 개선안 의견수렴 설명
- (3.18.~3.22.) **대국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p3~4)
- (3.3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미래지향적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재 전문가, 분야별(행정, 법학, 경제 등) 전문가 참석

2/13

## II.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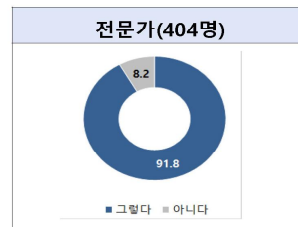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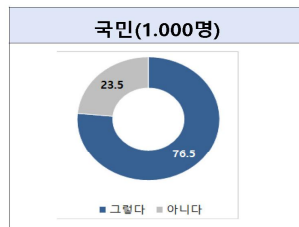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조사 실시 개요 ◆

- ▶ 기간 : 2022. 3. 18.(금) ~ 3. 22.(화) / 5일간 (전문 조사업체 의뢰)
  - ▶ 설문 대상
    - 국 민 :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 비례 배분)
    - 전문가 : 문화재위원회 등 위원 및 전문위원 404명 (총 471명 중 86% 응답)
- \* 문화재위원회 258명, 무형문화재위원회 52명, 수리기술위원회 70명, 고도보존·역사문화권위원회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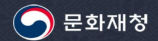
#### “국민 및 전문가 대다수,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8명(76.5%), 전문가 10명 중 9명(91.8%)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공감



3/13

## II. 추진 경과



### 2) 설문조사 결과

#### “국민 및 전문가 대다수, 유산 개념 변경 적절, 가장 적절한 통칭 명칭 국가유산 선택”

- 문화재 명칭을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과 전문가 모두 10명 중 9명 이상이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국민 90.8%, 전문가 95.8%)



- 각 유산을 포괄하는 통칭으로 ‘국가유산’이 적절 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87.2%, 전문가의 52.5%로 다수가 선택 함.(전문가: 국가유산 52.5%, 문화유산 38.9%, 기타 8.6%)



4/13

## II. 추진 경과

### 3) 개선안 확정 및 발표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

#### • (4.11.)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 개최(개선안 확정 및 발표)

- \* 내용 :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 논의 확정 /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  
결의문 발표 및 문화재청 전달, 언론 브리핑(문화재 담당 기자단 대상)



5/13

## II. 추진 경과

### 3) 개선안 확정 및 발표

####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위원회 결의문”

#####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의문

1962년 1월 10일 문화재 보호와 관리의 법률적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4월 10일 문화재위원회가 3개 분과(유형, 무형, 천연기념물), 17명의 위원으로 발족하여 운영된 지 60년이 되었다.

지난 60년 동안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민족 유산이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로 훼손·멸실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유산을 보호하는 버팀목으로서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다해 왔다.

문화재보호법은 그동안 70차례 개정을 통해 시대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오면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나아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예전 당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UN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결합성을 맞추고 문화재 정책법령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문화재위원회 발족 60주년을 맞은 올해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일동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하여 유산 보호와 가치를 증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가유산은 국가의 공적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국민 통합과 국가정체성의 정수이며 대한민국 헌법상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요체로서 문화국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은 그간 사용해 왔던 유물의 재화적 의미를 강하게 인식한 문화재(財)라는 과거 명칭 대신에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遺産)이란 새 명칭으로도 변경 확대하여 다음 세대에 더욱 넓게 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1. 국가유산은 이 땅과 해외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괄하며, 인류 공동의 세계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유네스코 유산 협약에 따라 보존과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은 지정문화재 중심의 종질보충주위에서 비이정문화재와 모든 유형·무형의 역사문화자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체제로 확대되어, 앞으로 과학기술, 산업,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여하는 미래자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총체적인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확충 배치하고 충분한 자원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국가유산 보호의 법적, 행정정책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2022년 4월 1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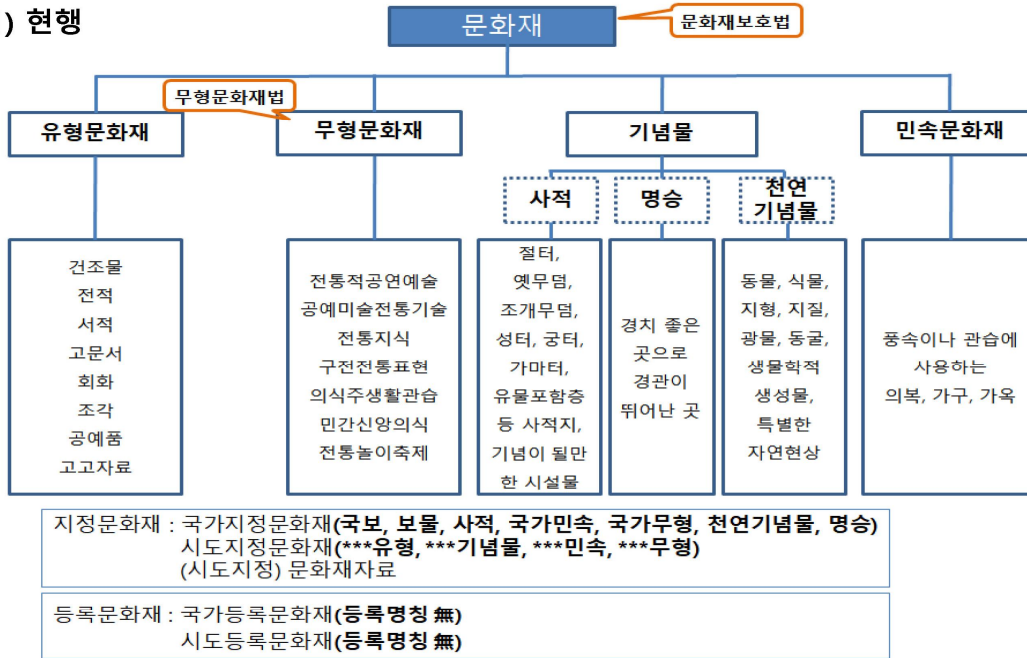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전영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신탁은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전통기술분과 위원장)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림 무형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운  
(감정문화재분과 위원장) (전통예능분과 위원장)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무형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호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전통지식분과 위원장)  
전승문화재분과 위원장 김영희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 윤인성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장 박정혜 민속문화재분과 위원장 강완관  
사적분과 위원장 이계운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김현우

6/13

### Ⅲ.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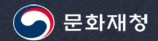


#### 1)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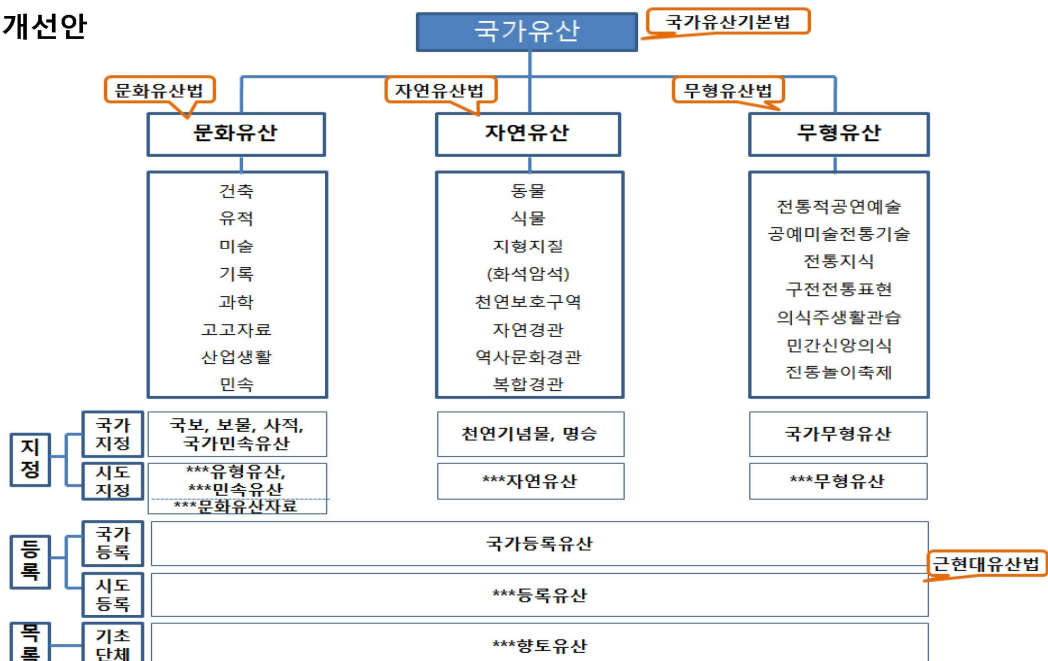


7/13

### Ⅲ.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 2) 개선안



8/13

### Ⅲ.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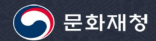
#### 3) 개선안 주요 내용

##### “문화재의 유산 개념 변경 및 국가유산체제 도입”

- (명칭 재정립) **문화'재(財)' ⇒ '유산(遺産)' 으로 변경**
  - 재화 개념의 '문화재' 탈피,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
    - \* 문화재(재화, 사물, 가치, 행정, 규범적 한정) ⇒ 유산(계승, 활용, 미래, 포괄적 보호로 의미 확장)
-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으로 '국가유산' 용어 채택**
  -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대응 개념, 헌법상 문화국가 실현
- (지정·등록체계 개선) **기존 지정·등록유산 외 목록유산 신설**
  -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산 보호 기반 강화
    - \*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9/13

### Ⅲ.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 3) 기대 효과

##### “국민 친화적 · 미래지향적 유산 보호 정책기능 대전환 기반 마련”

- ▶ **(대국민 관점) 여가·힐링 원천자원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 콘텐츠 공급, 일상생활 속 향유 활성화**
  - \* 역사·인물 중심 스토리 기반 유산 해설·홍보, 유산 애호의식 함양
- ▶ **(국제적 관점) 국제전문가 교류·네트워킹 활성화 속 세계유산 등재 여건 강화, 우리 유산 우수성 세계 확산,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력 확대**
  - \* 세계유산 등재 국제회의 국내 유치 추진 등
- ▶ **(유산 보호·활용 관점) 유산 본질적 가치 규명, 각 분야별 전문가 보호체계 마련으로 국가유산 관리시스템 혁신, 과학적·전문적 보호망 아래 폭넓은 활용·향유프로그램 확대 도입**
  -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한 유산 가치 극대화 보호시스템 완비
- ▶ **(경제·지역활성화 관점) 지역관광 거점 으로 육성, 지역주민·공동체와 함께 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지역정체성·차별성 지닌 특화자원 역할 수행**
  - \* 부산 남구 “오륙도” 특화경관, 경주 “대릉원” 옆 황리단길 등 지역발전 원천소스화

10/13

## IV.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계획(국정과제 포함)

“새정부 국정과제로 <국가유산체제 도입> 채택”

####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

▣ (국가유산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체제로 전환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 (법·조직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으로 분류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

-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 증진

• (~'22.下) 분류체계 개선안 반영,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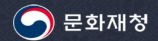
-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추진('22.8월 발의 예정)

\* 각 유산별 법률 정비 추진(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법 개정, 자연유산법 제정 등)

- 부처명 변경(문화재청→국가유산청)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행정안전부 협의 필요)

11/13

## V. (참고)국가유산 사례



### 1) 국가유산 용어 해외 사용 사례

□ 영 국 : 국가유산법(The National Heritage Act 1980) 및 국가유산기념기금(The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 국가유산을 법률 용어로 사용한 첫 사례, 1980년 국가유산법을 제정, 1981년 국가유산기념기금을 조성

□ 캐나다 : 국가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 1995년 국가유산부 발족을 위한 법을 제정

□ 호 주 : 국가유산 목록(The Australian National Heritage List or National Heritage List)

- 2003년부터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중요한 곳을 국가유산으로 정하고 목록을 작성

□ 미 국 :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101)

12/13

## V. (참고) 국가유산 사례



### 2) 국가유산 관련 '국가' 용어 사용례

#### □ 조직 및 기구, 기관

-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기술표준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철도공단, 국가교통정보센터, 국가한옥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 □ 사업 관련 명칭

- 국가정원, 국가지질공원, 국가공간정보, 국가기술자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표준, 국가시험,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통계, 국가중요농업(어업)유산, 국가지정기록물, 국가장학사업, 국가하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 국가 용어 법률 명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배상법, 국가회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표준기본법 등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